

사회적기업과고용관계연구소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7조에 의하여 본 대학교에 설치한 사회적기업과 고용관계연구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연구소는 가천대학교 사회적기업과고용관계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부른다.

제3조(소재) 본 연구소는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내에 둔다.

제4조(연구소의 목적) 본 연구소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고용·노동정책 및 사회적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학문과 실천적 분야의 연구로 국가 경제와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연구소의 사업) 본 연구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적자원 개발(HRD)과 인적자원관리(HRM)에 관한 연구
2. 노사관계의 안정과 노동조합의 발전적 역할에 관한 연구와 정책개발
3. 사회적기업 육성·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4. 고용·노동관계 및 사회적기업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5.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6조(구성) ①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소장 1인
2. 부소장 1인(삭제)
2. 감사 1인
3. 운영위원 5인

② 본 연구소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본부장과 연구위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사업본부) ① 본 연구소에는 전조의 목적과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의 본부를 둘 수 있다.

5-1-25~2 제5편 부설연구기관

1. 연구기획본부
2. 교육사업본부
3. 컨설팅사업본부

② 각 본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기획본부는 연구소의 모든 사업과 활동을 총괄적으로 기획·조정하며, 연구사업을 총괄 추진한다.
2. 교육센터는 각종 교육·훈련사업의 기획과 집행, 관련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3. 컨설팅사업본부는 외부 컨설팅과 관련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제8조(자격 및 임명) ① 본 연구소의 소장은 교내 전임교원 또는 연구소가 지향하는 사업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외부 저명인사로서 운영위원회 추천과 교무처장의 제청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② 본 연구소의 부소장은 연구소가 지향하는 사업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내·외 저명인사로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삭제)

② 본 연구소의 감사는 운영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본 연구소의 본부장은 연구위원중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경험을 토대로 탁월한 리더십을 지닌 자 또는 연구소가 지향하는 사업분야에 정통한 교내·외 인사로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본 연구소의 연구위원 및 연구원은 연구소가 지향하는 사업분야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내·외 인사로서 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제9조(직무 및 임기) ① 본 연구소의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② 본 연구소의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삭제)

② 본 연구소의 감사는 본 연구소의 업무전반과 회계 등을 감사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본 연구소의 본부장은 해당 직무분야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집행한다. 연구기획본부장은 연구 및 사업 조정·통제 업무를 총괄한다.

④ 연구위원은 본부장의 지시에 의거, 해당 분야에대한 업무 전반을 집행·관리하고 연구원을 지휘·감독한다. 연구원은 연구위원의 지휘·감독에 따라 해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⑤ 본 연구소 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본 연구소 연구위원과 연구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

제10조(본부의 설치와 연구원보) ① 본 연구소에는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분야별 (연구)본부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원보는 필요시 연구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그 결과를 연구처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고문) 본 연구소에는 국내·외 유관분야 저명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고문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2조(구성) 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구소가 지향하는 사업 분야의 교내·외 저명인사로서 소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 부소장(삭제) 감사, 경영대학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운영위원 총수는 5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3조(소집)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하며, 정기위원회는 매년 2월중 소집되며 임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혹은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소장 및 부소장 추천
2. 감사의 선출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소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5조(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4 장 재 정

제16조(운영예산)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교비지원금, 사업수입 및 기타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본 연구소를 통하여 외부 연구용역 수주시 연구비의 10% 이내를 연구소 운영비로 충당한다.

제17조(회계년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가천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5 장 보 칙

제18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운영세칙)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필요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설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 부터 시행한다.